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532호 2021년 5월 3일(월)

경 상 북 도

■ 고 시

○ 지방하천 반변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40호) ····· 5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안동시 택시 자율감차계획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41호) ····· 9

○ 중화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42호) ····· 11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43호) ····· 13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44호) ····· 15

■ 공 고

○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977호) ····· 17

○ 부동산개발업 말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978호) ····· 18

○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983호) ····· 19

시 군

■ 고 시

○ 영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정정)
(영천시 고시 제2021-38호) ····· 27

○ 경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1-80호) ····· 31

○ 경산 도시관리계획(영남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1-81호) ····· 33

○ 군위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위군 고시 제2021-38호) ····· 36

■ 공 고

○ 공인 신조 공고
(경주시 공고 제2021-1050호) ····· 40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10호) ····· 43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11호) ····· 44

◈◈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40호

지방하천 반변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지방하천 반변천에 대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같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분석과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하천관리방안의 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변경없음)

수계	하천명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우량 (㎜)	수자원 총 량 (백만㎥)	유출량(백만㎥)			손실량 (백만㎥)
					홍수시	평상시	계	
낙동강	반변천	329.25	953.4	313.91	127.38	45.44	172.82	141.09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 반변천은 지역별 홍수배분 계획은 없으며, 홍수량을 전량 하도내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음.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변경)

하천 명칭	측점(No.)		기본 홍수량 (m3/s)		계획 홍수량 (m3/s)		계획 홍수위 (EL.m)		계획 하폭 (m)		계 획 제방고 (m)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반변천	92+100	34+613	1,540	1,620	1,540	1,690	206.00	205.65	172	126	172	
	93+00	34+721	1,540	1,620	1,540	1,690	206.24	205.90	142	122	142	
	93+100	34+819	1,540	1,620	1,540	1,690	206.48	206.14	130	118	130	
	94+00	34+921	1,540	1,620	1,540	1,690	206.82	206.40	120	102	120	
	94+100	35+018	1,540	1,620	1,540	1,690	207.16	206.86	135	111	135	
	95+00	35+116	1,540	1,620	1,540	1,690	207.50	206.97	141	114	141	
	95+100	35+220	1,540	1,620	1,540	1,690	207.84	207.14	125	114	125	
	96+00	35+321	1,540	1,620	1,540	1,690	208.18	207.35	138	118	138	
	96+100	35+419	1,540	1,620	1,540	1,690	208.52	207.45	136	119	136	
	97+00	35+514	1,540	1,620	1,540	1,690	208.86	207.52	130	111	130	
	97+100	35+605	1,540	1,620	1,540	1,690	209.20	207.58	120	104	120	
	98+00	35+703	1,540	1,620	1,540	1,690	209.54	207.88	120	108	120	

하천 명칭	측점(No.)		기본 홍수량 (m3/s)		계획 홍수량 (m3/s)		계획 홍수위 (EL.m)		계획 하폭 (m)		계 획 제방고 (m)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98+100	35+807	1,540	1,620	1,540	1,690	209.88	208.17	131	116	131	
	–	35+877	1,540	1,620	1,540	1,690	–	208.64	–	124	–	원주 평교 (신설)
	99+00	35+905	1,540	1,620	1,540	1,690	210.13	208.82	150	131	150	
반변천	99+22	35+927	1,540	1,620	1,540	1,690	210.18	209.14	152	133	211.25	
	99+100	36+003	1,540	1,620	1,540	1,690	210.38	209.17	150	133	211.33	
	100+00	36+105	1,540	1,620	1,540	1,690	210.63	209.76	130	129	211.38	
	100+100	36+199	1,540	1,620	1,540	1,690	210.88	209.91	120	128	211.51	
	101+00	36+306	1,540	1,620	1,540	1,690	211.13	210.10	146	136	212.10	
	101+100	36+404	1,540	1,620	1,540	1,690	211.37	210.36	156	154	212.36	

주) 당초 : 지방2급하천 반변천 · 장파천 하천정비기본계획(2004. 11, 경상북도)(경상북도고시 2004-303호)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변경없음)

- 반변천은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기고시 사항 없음 : 금회 변경없음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하천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영양군(건설안전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 열람장소

경상북도 하천과(054-880-4070), 영양군 건설안전과(054-680-6731) 끝.

2.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변경)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 천 구 간(변경없음)			면적(㎡)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당초	변경	
반변천	지방하천	경북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 491번지선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1리 (1입암교)	26.90	27,319	28,142 (증 823)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구역(변경) 수립

주) 당초 : 경상북도 고시 제2020-304호

나.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변경)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는 경상북도(하천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영양군(건설안전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열람장소 비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경상북도 하천과(054-880-4070), 영양군 건설안전과(054-680-6731) 끝.

경상북도 고시 제2021 -141호

안동시 택시 자율감차계획 고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동시 택시 자율감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안동시 택시 자율감차계획

나. 감차기간 : 2020. 1월 ~ 2029. 12월 (10년)

다. 감차규모 : 242대 (일반192, 개인50)

라. 감차보상금액 : 일반 41,800천원/대, 개인80,000천원/대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은 미포함

2. 연도별 감차계획

가. 감차규모

(단위 : 대)

구 분	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감차대수	242	12	12	26	26	26	28	28	28	28	28
개인택시	50	0	0	5	5	5	7	7	7	7	7
일반택시	192	12	12	21	21	21	21	21	21	21	21

나. 감차재원 확보 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감차 대수	합계 (100%)	국비 (8%)	지방비 (92%)	기 타
계	242	12,042,400	928,200	11,114,200	
2020	12	510,000	46,800	463,200	
2021	12	510,000	31,200	478,800	출연금미포함
2022	26	1,277,800	101,400	1,176,400	〃
2023	26	1,277,800	101,400	1,176,400	〃
2024	26	1,277,800	101,400	1,176,400	〃
2025	28	1,437,800	109,200	1,328,600	〃
2026	28	1,437,800	109,200	1,328,600	〃
2027	28	1,437,800	109,200	1,328,600	〃
2028	28	1,437,800	109,200	1,328,600	〃
2029	28	1,437,800	109,200	1,328,600	〃

경상북도 고시 제 2021 -142호

중화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중화지구(준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 업 목 적 : 저수지 준설로 저수량 증대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으로 영농편의에 따른 민원해소 및 식량증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사 업 내 용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ha)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예정기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중화	고령	대가야	중화	164.0	준설 36,600㎥	280	2021.5. ~ 2021.12.31.	

3. 사 업 효 과 : 재해예방 및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지장물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6.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054-950-0732)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14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같은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사유

○ 현 도로여건을 반영하여「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연장(km)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이유	⑧비고
당초	지방도	935호선(임동~영춘)	시점 :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산127-4 종점 :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산94-4	0.2	없음	현 도로여건 반영	
변경	지방도	935호선(임동~영춘)	시점 :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산127-4 종점 :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산94-4	0.2	없음		

3. 접도구역 지정조서

도로의 지정	지방도935호선	노 선 명	임동~영춘
접 도 구 역 또 는 위 치	시점 :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산127-4 종점 :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산94-4		
접 도 구 역 지 정 목 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훼손방지 및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4. 도로구역 변경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공람장소 :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144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 5. 3.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하천 (낙화암천)	교 량 설 치	〈무명2교〉 L=56.0m B=10.5m 〈무명3교〉 L=54.0m B=10.5m (영구 4,689㎡) (일시 893㎡)	영주시 부석면 상석리 623번지 일원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경상북도북부 건설사업소장 (시설과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 2025.7.31

◈◈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 - 977호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위임국도	**노 선 명**	국도14호선 (거제-포항)
공사의 종류	문산2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준용구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8호선(일부구간) 진출입 도로 개설		
공 사 구 간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1880-105 ~ 1358-3번지 (L=1.225㎞)		
시 행 장 소	상 동		
착수예정일	2018년 4월	**준공예정일**	(당초) 2021년 4월 30일 (변경) 2021년 7월 31일
사유 : 본 공사 준공기한 변경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기간 연장			

경상북도공고 제2021-978호

부동산개발업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된 부동산개발업을 「같은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법 인 등록번호	소재지	말소일자	폐업사유
경북160009호	(주)예안이엔지 (변 상 무)	175511-0008861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7	2021.4.29.	사업부진
경북170014호	영진종합건설(주) (하 태 준)	174111-0001038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팔거천3길 59-12	2021.4.29.	사업부진

경상북도 공고 제2021- 983호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법 규정에 맞게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경상북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 정의, 적용대상을 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경상북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3조)과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안 제9조)

○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안 제10조)

- 데이터기반 정책수립과 평가, 통계·데이터 활용 사전협의제의 운영,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 명시 등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빅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전화: 054-880-2292 Fax 054-880-2149, 이메일: pragma@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

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4. “출자·출연기관”이란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관계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도지사는 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두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효과적 수행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및 평가

2. 통계·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사전협의제 운영

3.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통계 개발과 데이터 분석사업

4. 농업·환경·관광·물류·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5.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6. 데이터 관련 포럼, 경진대회,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7. 데이터기반행정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의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부서, 공무원·직원 등을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 군

고 시

영천시 고시 제2021 - 38호

영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정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영천시 고시 제2020-149호(2020.7.2.)로 고시한 영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1. 5. 3.

영 천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정정 고시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영천시 고시 제2020-149호(2020.7.2.)호로 고시한 영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일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반영 노선 및 일부 노선 실효 누락에 따른 고시 사항을 정정코자 함.

○ 정정 고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기존 고시[‘영천시 고시 제2020-149호(2020.7.2.)’, ‘영천시 고시 제2020-155호(2020.7.20.)’] 내용과 동일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조서(정정)

가. 도로

[당초]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조1	12	국지도로	90	조교361-2	조교361-3	일반도로	-	영고제4호(1994.01.27)	
폐지	중로	3	조1	12	국지도로	90	조교361-2	조교361-3	일반도로	-	영고제4호(1994.01.27)	전체실효
기정	소로	1	조1	10	국지도로	69	조교364-1	조교361-2	일반도로	-	영고제4호(1994.01.27)	
폐지	소로	1	조1	10	국지도로	69	조교364-1	조교361-2	일반도로	-	영고제4호(1994.01.27)	전체실효
기정	소로	2	98	8	국지도로	199	봉동658-2	봉동665	일반도로	-	경고제99호(1988.06.13)	
폐지	소로	2	98	8	국지도로	199	봉동658-2	봉동665	일반도로	-	경고제99호(1988.06.13)	전체실효
기정	소로	2	178	8	국지도로	64	덕성130-7	덕성130-7	일반도로	-	경고제48호(1972.09.04.)	

[정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조1	12	국지도로	90	조교361-2	조교361-3	일반도로	-	영고제4호(1994.01.27)	노선유지
기정	소로	1	조1	10	국지도로	69	조교364-1	조교361-2	일반도로	-	영고제4호(1994.01.27)	노선유지
기정	소로	2	98	8	국지도로	199	봉동658-2	봉동665	일반도로	-	경고제99호(1988.06.13)	
변경	소로	2	98	8	국지도로	119	봉동658-2	봉동665	일반도로	-	경고제99호(1988.06.13)	노선유지 및 연장 오기 정정
기정	소로	2	178	8	국지도로	64	덕성130-7	덕성130-7	일반도로	-	경고제48호(1972.09.04.)	
폐지	소로	2	178	8	국지도로	64	덕성130-7	덕성130-7	일반도로	-	경고제48호(1972.09.04.)	노선실효

■ 도로 정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조1	중로3-조1	ㆍ 폐지 노선 정정 고시 (일몰제 적용 정정) B=12m, L=90m	ㆍ 2020년7월2일(영천시 고시 제2020 -149호)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폐지하였으나, 조교동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13.9.16.)시 사업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 득한 노선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정정 고시함
소로1-조1	소로1-조1	ㆍ 폐지 노선 정정 고시 (일몰제 적용 정정) B=10m, L=69m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98	중로2-98	ㆍ 폐지 노선 정정 고시 및 연장 변경 (일몰제 적용 정정) B=8m, L=199m → B=8m, L=119m	ㆍ 2020년7월2일(영천시 고시 제2020 -149호)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폐지하였으나, 당초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영천시 고시 제2020 -131호, 2020.6.22.)를 득한 노선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정정 고시하고 결정 조서의 연장 오기를 정정함
소로2-178	중로2-178	ㆍ 노선 정정 실효 고시 (일몰제 적용) B=8m, L=64m → B=0m, L=0m(실효)	ㆍ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노선 고시 누락에 따른 금회 실효 정정함

3. 당초 실효일자 : 2020. 7. 1.

4. 당초 실효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노선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6.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청 도시계획과(T.054-330-6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1- 80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임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연구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연구시설	연구시설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일원	153,400	감) 86,499	66,901	경산시고시 제99-34호 (1999.08.09.)	

■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연구시설	■ 연구시설 축소 A = 153,400㎡ → 66,901㎡ 감) 86,499㎡	■ 산업기술단지 축소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축소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비 고
20% 이하	100% 이하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별첨(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053-81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1-81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영남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시 대동 214-1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영남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임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영남대학교	대학	대동 214-1번지 일원	2,438,764.1	증) 80,974.2	2,519,738.3	건고제9호 (83.01.10)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영남대학교	○ 학교 면적변경 - A = 2,438,764.1㎡ → 2,519,738.3㎡ 증) 80,974.2㎡	○ 문화시설 폐지로 학교시설로 편입된 필지중 학교법인 미소유 필지 제척 ○ 경북테크노파크 연구시설 축소에 따른 학교시설 면적변경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438,764.1	증) 80,974.2	2,519,738.3	
기정	가	교육연구시설	조영동 321번지 일원	732,825.0	-	732,825.0	
기정	나	주차장	삼풍동 224번지 일원	83,721.0	-	83,721.0	
변경	다	녹지	갑제동 산109번지 일원	1,331,504.1	증) 80,974.2	1,412,478.3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라	운동장	계양동 105번지 일원	107,431.0	-	107,431.0	
기정	마	도로	대동 258번지 일원	166,889.0	-	166,889.0	
기정	바	기타 (원형보전)	갑제동 304번지 일원	16,394.0	-	16,394.0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다	녹지	○ 녹지 면적변경 - A = 1,331,504.1㎡ → 1,412,478.3㎡ 증) 80,974.2㎡	○ 학교시설 면적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녹지용지로 지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별첨(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 053-81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위군 공고 제2021-38호

군위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89-1번지 일원의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위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9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군 위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8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위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사업

○ 명 칭 :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내 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26,169㎡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군위군수(산림축산과)

○ 주 소 :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명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407,313	26,169						
1	동산리	31	전	1,901	1,901	군위군					
2	동산리	32	임	1,954	1,954	군위군					
3	동산리	33	임	1,064	1,064	군위군					
4	동산리	34	천	1,117	1,117	이*용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03-8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명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	동산리	35	임	2,122	1,656	이*용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03-8				
6	동산리	40	과	2,132	2,030	군위군					
7	동산리	40-1	과	427	193	군위군					
8	동산리	41	임	2,506	2,430	군위군					
9	동산리	42	임	929	805	최*문	동산동				
10	동산리	43	묘	770	729	최*실	선산군장천면석우동				
11	동산리	44	과	4,086	1,417	군위군					
12	동산리	45	과	2,615	1,511	군위군					
13	동산리	46	과	2,172	526	군위군					
14	동산리	47	과	1,590	3	군위군					
15	동산리	산89-1	임	214,024	8,263	군위군					
16	동산리	산92	임	158,678	491	군위군					
17	동산리	산180	구	9,226	79	국토교통부					

※ 관계도서는 군위군청 지역활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지역활력과(054-380-6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 군

공 고

경주시 공고 제2021 - 1050호

공인 신조 공고

경주시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사유 :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 사용 일자 : 2021. 5. 3.

3. 신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2021. 5. 3.

경 주 시 장

□ **신조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인 영	비 고
수입증지요금계기전용 중부동장의인 통합민원사무용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수입증지요금계기전용 경주시장의인 중부동통합민원사무용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수입증지요금계기전용 용강동장의인 통합민원사무용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수입증지요금계기전용 경주시장의인 용강동통합민원사무용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

기 타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 - 21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 5. 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반변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체육새마을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779번지 외 1필지 일원 면적 : 38,193㎡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용상야구장 조성 시설개요 : ■ 성인야구장(2구장) - 시설물공 : 그물망휀스 H10000(200.0m), 이동식휀스 H1500(164m), 더그아웃 9,000*3,000(이동식 2개소), 기록석 9,000*3,000(이동식 1개소), 창고 3,000*6,000 (이동식1개소) **- 배수공 : 원형배수로집수정 460*1000(3개소), 원형배수로 W=460 직선(364.0m),** **- 포장공 : 인조잔디포장 T=35(9,358.0㎡)**
점용 기간	2018년 3월 13일부터 2023년 3월 12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 - 21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 5. 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형산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경주시장(미래사업추진단)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20-1번지 외 98필지 일원 면적 : 88,695㎡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수상테마공원 조성 시설개요 : - 1지구(수상테마파크) : 흙콘크리트 포장 846㎡, 아트플로어 1개소 (A=765㎡), 스텐드 1개소(B=10m, L=45m) - 2지구(자연학습원) : 데크로드(A=1211.6㎡), 전망데크 4개소(A=524㎡), 태양광공원등 및 조명 266개 목교 2개소(A=89㎡), 자연석계단 2개소(A=32.2㎥), 석축쌓기(H=2.5m, L=60m) 잔디식재 4,892㎡, 흙콘크리트포장 1,511㎡ - 3지구(수변공원) : 흙콘크리트포장 3,048.2㎡, 칼라아스콘 포장 2,272㎡, 도막포장 648㎡, 파고라 2개소, 화강석의자 25개, 수목식재 등, 데크계단(B=1.2m, L=4.5m), 자연석계단 1개소(A=18.52㎡)
점용 기간	2017년 1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